

[별첨1] 2025 인천교사노조-인천교육청 단체(보충)협약안(25.12.26)

## 2025년 인천광역시교육청-인천교사노동조합 단 체 협 약 서

2022. 4. 8. [단체협약]

2025. 12. 26. [보충협약]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교사노동조합

# 2025년 인천광역시교육청 - 인천교사노동조합 단체협약

## 전 문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인천교사노동조합(이하 “인천교사노조“라 한다)은 헌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근로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바람직한 교원노동관계 형성을 위하여 본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 제1장 총칙

### 제1조 【적용범위】

본 협약은 교육청과 인천교사노조 및 공립학교 교원인 인천교사노조의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이 협약에서 학교는 공립 유, 초, 중, 고, 특수학교를 모두 포함한다. 교육청은 본 협약의 내용 중 공사립 교원의 지위 향상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에도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제2조 【협약의 존중 및 타 단체와의 관계】

- ① 교육청은 본 협약 사항에 대해서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교사노조와 협의 없이 그 내용을 저하시킬 수 없다.
- ② 교육청은 교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인천교사노조와 체결한 협약과 다른 단체의 교섭요구안이 상충될 경우 해당 안전에 대하여 인천교사노조와 사전 협의한다.
- ③ 교육청은 인천교사노조에게 타 교직단체 및 공무원노조와 동등한 대우를 하며, 불평등한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없도록 한다.
- ④ 교육청은 교원의 근로기준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 조례 또는 법령,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및 예산에 의한 규정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한 본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한다.(보충협약, 2025.12.26.)

### 제3조 【조례·규칙의 제·개정】

교육청은 교원의 근로조건 등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 규칙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교사노조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 제2장 노동조합 활동

#### 제4조 【노조 활동의 보장】

- ① 교육청은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합 활동을 보장하며, 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교육청은 단체협약 합의사항을 공문으로 시행하고, 단위학교장이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조합 활동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 교육청과 인천교사노조의 단체교섭에 교섭위원으로 참석
  2. 교육청과 인천교사노조의 현안협의회(보충협약, 2025.12.26.)
  3. 대의원과 중앙위원으로서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참석
  4. 노조 집행위원으로서 집행위원회 참석
  5. 조합원 대상 연수 및 행사
  6. 집행부의 조합원 대상 교원노조 업무 수행
- ④ 교육청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사노조가 주관하는 월 1회, 2시간 이내의 교내·외 조합원 교육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방과 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⑤ 교육청은 바람직한 교사 노사관계 형성과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이 직접 관장하는 교원연수기관의 자격연수 및 신규교사 연수 과정에 노사관계의 이해 연수 실시와 인천교사노조의 강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유치원 교사연수는 인천교사노조의 강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수운영위원회를 실시하여 강사를 선정하도록 노력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⑥ 교육청은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및 신규교사 연수에서 교직원단체 홍보 자료의 게시 및 배포를 허용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⑦ 교육청은 인천교사노조의 전임자가 임기를 마치고 복귀할 시에는 원칙으로 복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후임 충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 ⑧ 교육청은 다른 교섭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교육청 홈페이지 하단 배너영역에 인천교사노조 홈페이지 연결 배너를 설치한다.
- ⑨ 교육청은 인천교사노조가 학교 내 게시판 설치를 희망할 경우 학교 시설 사용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⑩ 교육청은 수업 및 학교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홍보 활동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 ⑪ 교육청은 교육청이 주최하는 교원의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세미나, 공청회 등에 인천교사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⑫ 교육청은 인천교사노조 전임자 허가 신청 시,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노동조

합 전임자를 인정한다.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승진, 연금산정, 전보인사 또는 그 밖에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 ⑬ 교육청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를 분기별 4시간 이내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⑭ 인천교사노조가 지정하는 전임자에게 ice-talk 메신저 계정을 제공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하도록 한다.
- ⑮ 교육청은 인천교사노조가 주관하는 교육행사에 대하여 관련 조례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보충협약, 2025.12.26.)
- ⑯ 교육청은 인천교사노조와 상호 존중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구축되도록 노조의 조합활동(서면질의, 유선통화, 면담요구)에 협조한다.(보충협약, 2025.12.26.)

### **제5조 【노조 활동 중 재해】**

교육청은 인천교사노조의 전임자 또는 비전임 조합원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교섭 관련 협의와 정책 협의회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공무상재해보상법」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6조 【인천교사노조와 사전 협의】**

교육청은 공무원노조 등 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시 교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교사노조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 **제7조 【부당노동행위 예방】**

- ① 교육청은 바람직한 교원 노사 관계 형성을 위하여 교육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자격연수 과정에 관련 과목을 개설하도록 노력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사 관련 과목의 개설·운영에 있어 사전에 교원노조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제8조 【시설 편의제공】**

- ① 교육청은 인천교사노조가 요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 규모의 사무실 및 조합 활동에 필요한 집기, 사무기기 등 통상적인 비품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공하도록 한다.
- ② 교육청은 인천교사노조가 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기관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제9조 【조합비 일괄 공제】**

교육청은 인천교사노조가 조합원의 조합비를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지급받고자 할

경우,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대상자의 조합비를 공제하여 지정계좌에 예금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정보제공을 동의한 조합원에 한하여 인천교사노조에 공제 내역을 통보한다.

#### **제10조 【통지 및 문서 발송 편의제공】**

- ① 교육청은 인천교사노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 정보에 대하여 열람과 사본의 제공을 허용한다.
- ② 교육청과 인천교사노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상호 제공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1. 교육청 제공 사항(보충협약, 2025.12.26.)
    - 가. 교육청 및 직속 기관의 조직표
    - 나. 교육통계연보 등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등록 각종 간행물
    - 다. 각급 학교에 보내는 공문 중 노조가 요구한 공문  
(교원단체 및 교원의 근무 여건, 교육정책 관련 등)
    - 라. 교원의 정기전보 인사발령 사항
    - 마. 단체협약 이행 관련 공문
    - 바. 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및 시책 등
    - 사. 각급학교에 배부되는 정부, 교육부, 교육청 간행물 중 노조가 요구한 자료
  2. 인천교사노조 제공 사항
    - 가. 규약의 변경사항
    - 나. 인천교사노조의 임원 현황
    - 다. 인천교사노조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 ③ 교육청은 인천교사노조가 교육청에 각종 문서를 발송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이첩을 요구할 경우 교육적으로 필요한 문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 【현안협의회 구성 · 운영】**

교육청과 인천교사노조는 단체협약 이행사항 협의, 교육 현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현안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 · 운영한다.

1. 협의는 반기별로 1회, 4시간 내로 실시하며, 교섭이 진행 중일 경우 교섭 관련 회의로 대체한다.
2. 교육청 대표는 국장급 으로 하고, 개최시기-협의안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보충협약, 2025.12.26.)

#### **제12조 【인천교사노조 - 교육감 면담 정례화】**

인천교사노조와 교육청의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해 위원장과 교육감의 면담을 정례화하여 반기별로 1회 실시한다.(보충협약, 2025.12.26.)

### 제3장 교원의 전문성 보장 및 업무 정상화

#### 제13조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 ① 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교원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② 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시 학생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강제하거나 유도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③ 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 처리 단계에서는 원자료 열람 요청 처리, 결과 분석 및 능력개발계획서 작성, 운영결과보고서 작성, 평가 결과 활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업무는 평가 관리자인 교감이 직접 처리하도록 지도한다.

#### 제14조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

교육청은 교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폐지를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교원 차등 성과급제 폐지를 위해 노력한다.

#### 제15조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 ① 교육청은 2급 정교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경력 3년 이상이면 1급 정교사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자격연수와 직무연수에 대한 연수 경비를 지원하고 연수 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단, 학교 내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제외한다.)
- ③ 교육청은 교육청이 인정하는 특수분야 직무연수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자비부담 직무연수에 대하여 연수 기관에 납부하는 연수경비의 교원 1인당 지원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출장처리 할 수 있다.
- ④ 교육청이 주관하는 직무연수는 학교당 일률적인 인원배정을 지양하고 연수대상자는 연수과정의 내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단, 의무연수과정은 예외로 한다.
- ⑤ 교육청은 초등학교 과학과 실험 연수와 관련하여 교사의 연수선택권을 존중하며 질 높고 다양한 형태의 연수로 개설하되,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⑥ 교육청은 교육연수원 주관 연수프로그램 편성 시 교원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인천교사노조에서 의사를 개진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 ⑦ 교육청은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 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⑧ 교육청은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교장 · 교감 자격연수를 방학 중에 실시하도록 노력하며, 자격연수가 학기와 중복될 경우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보강을 실시할 강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 ⑨ 교육청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를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자율연수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별도의 보고서를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⑩ 교육청은 민간·공공기관(단체)의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특수분야 연수기관 심의·관리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도록 하며, 연 2회 신청·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연 1회 추가 신청·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 ⑪ 교육청은 1급 정교사 연수를 받은 이후에 교사가 희망할 경우, 교과별 30시간 이상의 연수를 일정 기간마다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⑫ 교육청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기중 선발연수에 교사가 선발되었을 경우, 강사채용을 통해 해당 교사가 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⑬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교내 자율장학 계획 외에 별도로 수업장학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교사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안내한다.
- ⑭ 교육청은 자율연수비 지원을 유, 초, 중, 고, 특수, 기타, 각종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한다.(보충협약, 2025.12.26.)
  - 가. 교육부 장관 및 17개 시도 교육감이 승인한 자율연수(특수분야, 원격연수와 관련된 연수 경비: 학습 중인 연수 교재비 포함)
  - 나. 교원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무 연수 (예: 교과교육, 생활지도(교육), 상담 등)
  - 다.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과정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
  - 라. 직무 관련 공인(국가, 민간) 자격증 취득 연수, 학원 수강료, 대학 학비
  - 마. 자기계발 도서(전자책 개별 구입 포함)
- ⑮ 교육청은 학교에서 자율연수비를 지원할 때 교원 1인당 연수 경비를 횡수 제한 없이 연수경비(여비제외)의 100%(최대 250,000원)까지 하도록 권장한다.
- ⑯ 교육청은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사와 파견교사의 자율연수비를 학교 소속 교사와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추진한다.(보충협약, 2025.12.26.)

#### **제16조 【연구 환경 조성】**

- ① 교육청은 교사들이 자율적인 교과 모임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할 경우,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정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며, 전문성 있는 교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 ② 교육청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과, 학년별 연구 활동 및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에 반영되도록 지도한다.
- ③ 교육청은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학습 연구년제가 합리적으로 확대·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④ 교육청은 교과, 학년별 연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에 교과·학년별 연

구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교과·학년 협의회비를 학교 예산에 반영되도록 권장한다.

- ⑤ 교육청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교원의 교육강사 수당 강사료 기준 변경 시 관련 부서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⑥ 교육청은 교원이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을 수강할 경우 교육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7조 【컨설팅 장학】**

컨설팅 장학은 학교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장학위원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한다.

#### **제18조 【연구·시범학교 및 각종 공모사업 운영 개선】**

- ① 교육청이 자체 지정하는 연구·시범학교 공모는 학교교육계획 수립 이전(전년도 말)에 완결하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학기 중에 추가로 공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② 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연구·시범·교육실습협력학교 및 공모 사업을 신청할 때, 교직원협의회를 반드시 거쳐 교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시 응모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에 민주적 절차 및 과정에 대해 제반 사항을 전 교사에게 안내하도록 지도한다.
- ③ 교육청은 연구·시범학교 공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한다.

#### **제19조 【교원 승진 및 인사 제도 개선】**

- ① 교육청은 미래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사승진체계가 마련되도록 교장, 교감 및 교육 전문직 인사의 임용 및 승진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교원인사제도 개선 시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인천교사노조의 참여를 보장한다.
- ③ 교육청은 학교가 교장공모제 대상학교 지정을 신청할 때, 사전에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장공모제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제20조 【교원인사자문위원회】**

- ① 교육청은 각급학교에서 교원인사자문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운영되도록 지도한다. 각 학교의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
  - 1. 교무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 2. 보직교사 임명에 관한 사항
  - 3. 교과 전담교사와 학급 담임 배정에 관한 사항
  - 4. 포상 후보자와 해외 연수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정기 전보 시 우선 전보 요청 및 전보 유예(유임자 선정)에 관한 사항(보충협약, 2025.12.26.)
6. 기타 교원인사에 관한 주요사항
- ②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내용에 대하여 학교장은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그 결정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한다.
- ③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교감(1인)으로 하고, 교사위원은 교원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 절차를 거쳐 구성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④ 교육청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4에 규정한 교원인사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지도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⑤ 교육청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4에 규정한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의 임명 시 교원전체 의견을 반영하도록 지도한다.(보충협약, 2025.12.26.)

#### **제21조 【교원인사관리 원칙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은 교원 인사 관리 기준 수립을 위한 협의회에 인천교사노조에서 추천한 위원을 1인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제22조 【전보 제도】**

- ① 교육청은 교사초빙제가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지도하고, '교사초빙제 운영 지침' 유의사항의 적용을 지도하여 초빙교사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교원의 정기전보 인사발령 시 학사 일정과 주거지 확보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1월 안에 실시한다.
- ③ 교육청은 성희롱 및 교권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 교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긴급 전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본인의 전보 자료를 공개 요청할 경우 본인의 자료에 한하여 공개한다.
- ⑤ 교육청은 교육과정운영과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규 교원의 희망에 따라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⑥ 교육청은 전입 예정 학교에 업무분장, 임시 출근 등의 사유로 방문해야 할 때 현 소속 학교에서 출장 처리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⑦ 교육청은 교원의 휴직원(휴직원 및 서약서) 문구를 개선하고 서약서를 확인서로 변경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⑧ 교육청은 우선전보, 전보유예제도를 축소하도록 노력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⑨ 교육청은 정기전보 발령 시, 복직예정자가 복직신청을 한 경우 복직예정자의 희망을 최대한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⑩ 교육청은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 다면평가에 대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한다.(보충협약, 2025.12.26.)

### 제23조 【법정 교원 수 확보 및 교육 지원 강화】

- ① 교육청은 정규직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행 · 재정적 노력을 한다.
- ② 교육청은 학교에서 사회복지요원을 신청할 경우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 ③ 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가 20명이하 수준이 되도록 노력한다.
- ④ 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교과전담교사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교과전담교사 부족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보충협약, 2025.12.26.)

### 제24조 【학습지도안의 자율적 작성】

- ① 교육청은 학습지도안, 주간학습계획안, 일일교육계획안을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활용하고, 결재 및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하며 이수 집계표는 수기 작성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연간지도계획은 교과, 학년 협의회를 통해 자체 수립하도록 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② 교육청은 교내 장학 수업 및 학부모 공개수업 시 학습지도안을 작성하여 결재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고, 형식과 내용 모두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 제25조 【교원 업무 정상화】

- ① 교육청은 교사가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 ② 교육청은 학교 업무 분장 시 학교구성원의 민주적인 의견수렴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업무표준안 작성을 위한 사업부서별 업무협의회 운영 시 인건교사노조를 포함한다.
- ③ 교육청은 각 부서에서 직종별 업무표준안 마련을 위한 관련 계획 수립 시 관련 교사를 포함하여 협의하도록 안내한다.
- ④ 교육청은 법정 장부 이외의 학교장 장부, 비업무 승인장부, 기타 장부는 교원업무 경감 차원에서 폐지하되, 교육적으로 필요한 장부에 한하여 교직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치하도록 지도한다.
- ⑤ 교육청은 외부행사 안내, 각종 소식지, 공통지시 전달사항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노력하되, 학부모의 회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 방법을 결정하도록 한다.
- ⑥ 교육청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교육외적 활동에 학생을 동원하지 아니한다.
- ⑦ 교육청은 학교 내 각종 위원회 회의록 간소화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한다.
- ⑧ 교육청은 학교장이 위임전결규정을 정비하여 결재과정을 간소화하도록 지도한다.

- ⑨ 교육청은 국회·시의회 등의 자료 요구 시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가급적 이미 구축된 교육통계자료를 활용한다.
- ⑩ 교육청은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교과서 관련 업무 중 교과서 선정 외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지도한다.
- ⑪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단체 활동을 교사와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 ⑫ 교육청은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시 학교별 추천 인원제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도록 지도한다.
- ⑬ 교육청은 교사의 방과후학교 업무경감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예산 관련 업무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구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교원단체를 포함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 ⑭ 교육부 지침(교수학습평가과-5336, 2021. 8. 9)에 따라 교육청은 방역 인력 채용 업무가 교사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
- ⑮ 교육청은 방과후강사, 기간제 교사 등의 성범죄 조회 업무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안내한다.
- ⑯ 교육청은 관계회복과 소통중심의 학교폭력전담기구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이 정한 바 이외에 불필요한 보고 및 공문발송 등을 축소하도록 노력한다.
- ⑰ 교육청은 법령에 의한 교직원 의무교육 및 연수(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를 통합개설하도록 노력하고 관련 정보를 학년초에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⑱ 교육청은 각급학교에서 CCTV관련 업무 추진 시 합리적인 업무분장을 하고 관련 부서가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지도한다.
- ⑲ 교육청은 스쿨뱅킹 미납 학생 독촉 업무 등을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⑳ 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의 전출입 관련업무 분장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안내한다.
- ㉑ 교육청은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답사의 경우 보험에 가입된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㉒ 교육청은 각급학교에서 전문업체가 실시하는 연 1회 이상의 교내외 대청소를 예산에 편성·운영하도록 지도한다.
- ㉓ 교육청은 다문화 가정 및 외국 국적을 가진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통번역 및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 ㉔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행동특성 누가기록은 담임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 활용하고 별도의 결재 및 점검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보충협약, 2025.12.26.)
- ㉕ 교육청은 교과서 배부 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최소화와 교직원의 업무 경감을 위하여 각 학교에서 외부 인력 활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권장한다.  
(보충협약, 2025.12.26.)

- ②⑥ 교육청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수능원서비를 스쿨뱅킹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하거나 수험생이 직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가상계좌 이체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②⑦ 교육청은 성범죄경력조회 관련 안내 시, 취업예정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학교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을 안내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②⑧ 교육청은 간소화된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 예시 양식을 개발·배포하고, 각급 학교가 이를 참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②⑨ 교육청은 고등학교에서 개설하는 선택과목은 각급 학교 교사 정원을 고려한 교과협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며, 교육과정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소수 선택과목은 꿈두레교육과정 등 다양한 이수 방안을 안내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③① 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지필/수행평가(서술형 평가 포함) 비율을 교과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③① 교육청은 단순한 시험출제 오류와 관련해서 시험의 공정성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시험 관련 학업성적관리매뉴얼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보충협약, 2025.12.26.)
- 선택형 평가 문항에 오류가 있거나 공정성이 훼손된 경우, 교과(학년)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 (1) 채점 중 복수 정답이 발생하는 경우, 복수 정답 인정
  - (2) 채점 중 정답 없음 또는 모두 정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문항 배점을 '0' 또는 '모두 정답' 처리
  - (3)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전에 공지하여 성적 처리에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처리
- ③② 교육청은 체험학습 업무 개선을 위해 다음 각호를 실시한다.(보충협약, 2025.12.26.)
1. 1일형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보조인력(안전요원) 배치를 권장 운영한다. 단, 안전요원이 미배치된 경우, 학교실정에 맞게 인솔자(교원, 직원, 외부인력(학부모, 자원봉사자 등))를 추가 확보하여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안전복지과와 학교지원단에서 외부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2. 숙박형 체험학습 컨설팅은 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한다.
- ③③ 교육청 학기 초 학부모 의무연수 자료를 한글, ppt 등으로 만들어 배포한다.(보충협약, 2025.12.26.)

## 제26조 【각종 학생대회 참가】

- ①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 시, 교사의 인솔 부담을 줄이기 위한 T/F(협의체)를 구성하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② 교육청은 교육청이 주최하는 각종 체육대회에 현장교사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대회운영 실무를 맡기지 않는다.(보충협약, 2025.12.26.)

### 제27조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

- ① 교육청은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을 위해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학교별 실정에 맞는 부서체계와 업무분장을 조직·운영하도록 한다.
- ② 교육청은 수업시수 협의 시 학교별·교과별 교사 현황 및 특성, 업무분장 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과정(학년, 교과협의회 등)을 거쳐 조정하도록 권장한다.
- ③ 교육청은 학교장에게 교사가 자녀돌봄휴가를 신청할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허가하도록 지도한다.
- ④ 교육청은 각급학교의 복무 결재권자가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교원의 복무를 NEIS로 승인하며, 사전 대면 또는 구두 보고하는 절차를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⑤ 교육청은 법령에 의무 규정되지 않은 서약서는 폐지한다.  
(학생에게 징구하는 서약서:학교생활교육과)
- ⑥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은 단위학교에서 교사결원으로 인한 수업 결손이 발생할 경우 계약제교사 운영 지침에 따라 기간제 교사 및 시간 강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⑦ 학교지원단은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운영하여 단위학교에서 기간제교사 및 강사 채용 시 필요한 서류를 지원한다.
- ⑧ 학교장은 부득이 해당학교 교사가 보결수업을 할 경우 적정액의 보결 수업 수당을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 ⑨ 교육청은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무업무시스템을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⑩ 교육청은 학급 내 위기학생 발생 시 관리자가 협력하도록 지도한다.
- ⑪ 교육청은 필요한 문서만 발송하도록 ‘문서통제관’을 지정하여 학교 공문서 감축을 위해 노력한다.
- ⑫ 교육청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학교로 발송하는 공문의 제목 앞에 ‘제출’, ‘참석’ 등의 공문서 성격을 표시하는 ‘공문서 성격표시제’를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 ⑬ 교육청은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관리시스템과 ice-talk 메신저를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⑭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특근매식비가 교사의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에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⑮ 교육청은 초등학교 보결수업비 지급범위에 점심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을 학교에 안내한다.(보충협약, 2025.12.26.)

### 제28조 【근로 및 휴게 시간】

- ① 교육청은 교사의 초과근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② 교육청은 교사의 자기 연찬 기회 확대를 위해 유, 초, 중, 고등, 특수, 각종, 기타 학교에서 교사의 방학 중, 재량휴업일, 기타휴업일의 일직성 근무를 폐지한다.
- ③ 교육청은 방학과 재량휴업일에 돌봄교실이나 도서관, 방과후 수업 등의 관리를 위하여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근무를 명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단, 학생교육활동 관련하여 근무가 필요한 경우 학교 구성원의 토론과 투표 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반영하여 운영 사항을 결정한다.

#### **제29조 【생활기록부 업무 간소화】**

- ① 교육청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성적(교과 학습발달 등), 종합의견 외에 진로 희망 사항, 독서기록, 방과 후 활동, 자격증 인증,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기록항목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지침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체험활동 누가기록 NEIS입력을 강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전출생의 경우도 누가기록 NEIS입력을 강제하지 않는다.  
(보충협약, 2025.12.26.)

#### **제30조 【직위에 따른 구분】**

교육청은 직위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 **제31조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육청은 일부 과밀 학급의 학습여건 개선과 함께 대규모 학교의 학습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32조 【교수 · 학습과정】**

- ① 교육청은 ‘인천시교육청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사노조에서 추천한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교육청은 국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 ·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한다.
- ③ 교육청은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교과목 간 교원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수전공, 부전공 연수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 ④ 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과정 중심의 평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⑤ 교육청은 문예체 분야의 협력 수업 지원 사업을 지속한다.
- ⑥ 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교사 고유의 교수학습권과 평가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제33조 【민주적인 학교운영】**

- ① 교육청은 교직원 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 상정 등이 법적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한다.
- ③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교무회의 및 각종 협의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한다.

#### **제34조 【교구 및 교과서 선정】**

교구 및 교과서 선정은 교과 협의회 추천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 **제35조 【방과 후 활동】**

- ① 교육청은 방과후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 및 교육청 지침에 따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희망 교사가 실시하도록 하며, 학생을 강제로 참여시키는 형태의 교과 보충수업, 선행 교육 및 성적에 따른 일부 학생에 대한 예산 지원 등 비교육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② 교육청은 초·중학교의 경우 경시대회와 특목고 진학을 목적으로 한 방과후학교 운영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중·고등학교에서 입학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학습 및 경시대회를 실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③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담당교사의 업무경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한다.
- ④ 교육청은 초등돌봄전담사의 부재 시에는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운영한다. 부득이하게 교사가 대체 근무할 경우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 ⑤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유치원돌봄 포함)의 마을확대 방안을 단계적으로 모색하여 학생 수요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⑥ 교육청은 초등학교의 돌봄교실 업무경감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고, 초·중등학교의 방과후학교 행정업무로 인해 교사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노력한다.
- ⑦ 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늘봄(돌봄, 초등 방과후 등) 관련 업무를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지도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⑧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의 원격 수업 시, 등교하는 학생을 위한 원격 수업 지원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제36조 【자율학습 등】**

- ① 교육청은 자율학습 운영과 관련하여 경비를 징수하거나 불법 모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② 교육청은 중·고등학교의 자율학습과 관련하여 초과근무한 교사에 대하여 공무원 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제37조 【감사제도】**

- ① 교육청은 학교 감사 시 교원의 교무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는 가급적 교육 전문직이 담당하도록 하고, 학교자율종합감사를 확대·운영한다.
- ② 교육청은 감사결과를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하고 공통지적 사항 사례집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안내한다.
- ③ 교육청은 특별감사 시 당해 학교의 사정을 고려하여 감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하에 인천교사노조가 감사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 **제38조 【교육 예산의 편성 및 운영의 합리화】**

- ① 교육청은 학교예산 편성 시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직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하도록 한다.
- ② 교육청은 학교예산 및 결산 등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 홈페이지 게시 등 학교 실정에 맞는 공개 방법으로 교직원, 학부모에게 예산 확정 후 10일 이내에 공개한다.

### **제39조 【학부모 부담 교육비 경감】**

교육청은 교복, 체육복구매, 졸업앨범 제작,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학부모부담경비 사업에 있어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학부모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한다.

### **제40조 【학급운영비】**

- ① 교육청은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학급운영비는 연간 학급당 30만원 이상으로 책정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교육청은 각급학교에서 '학급운영비'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집행토록 지도한다.

### **제41조 【사립학교 지도·감독】**

- ①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제교사의 채용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한다.
- ②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정규 교원 비율이 가급적 공립학교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한다.
- ③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공립과 동등한 지원기준에 의해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 ④ 교육청은 사립학교 내에서 부당한 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한다.

### **제42조 【학교평가 개선】**

- ① 교육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 활동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학교 평가를 실시한다.
- ② 학교평가 결과는 학교 운영과 교육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 자료로 활용한

다.

## 제4장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 제43조 【공립유치원 확대】

- ① 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의 교원 정원수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1.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여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다.
  2. 초등학교 신설의 경우, 원아수용 여건 충족 시 3학급 이상의 병설유치원을 설치한다,
- ③ 교육청은 유치원 학급당(혼합학급 포함) 유아수를 지속적으로 감축한다.
- ④ 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유아정원을 각 항과 같이 유지한다.

(보충협약, 2025.12.26.)

1. 만 5세 학급: 19명(18명)
2. 만 4세 학급: 17명(16명)
3. 만 3세 학급: 12명(11명)
4. 혼합 학급: 15명(14명)

\*( ) : 웅진군, 강화군 소재 유치원 학급 당 유아정원

### 제44조 【공립유치원 정책 마련 및 의견 수렴】

- ① 교육청은 인천광역시유아교육위원회에 인천교사노조의 참여를 보장한다.
- ② 교육청은 인천미래유아교육협의회에 인천교사노조의 참여를 보장한다.
- ③ 교육청은 유아교육 관련 주요 정책 수립 시 교원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④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전담교사 배치 기준 마련 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보충협약, 2025.12.26.)

### 제45조 【공립유치원의 교육여건 및 근무여건 개선】

- ① 교육청은 조직개편 시 유.초등교육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도록 노력하고 유아교육 관련 부서 인력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유아교육 전문직(장학관, 장학사)이 적정 인원 선발되도록 노력한다.
- ③ 교육청은 유치원 (겸임)관리자의 누리과정 이해 증진과 민주적인 유치원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유치원 (겸임)관리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 ④ 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전문직의 현장 이해 증진과 민주적 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여 실시한다.
- ⑤ 교육청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공립유치원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 ⑥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누리과정에 명시된 운영시간(1일 4~5시간)을 융통성있게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⑦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교사의 근무시간을 보장하며, 출근 시간 이전 및 퇴근 시간 이후 업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 ⑧ 유치원장은 교육과정 보결수업이 필요할 경우 대체인력 투입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공립유치원 교사가 보결수업을 할 경우 보결수업비를 지급한다.
- ⑨ 교육청은 신체활동, 바깥놀이 등 체육활동을 지도하는 공립유치원 교사의 피복비를 학교회계 예산에 편성·지원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⑩ 교육청은 공립유치원에서 미세먼지 및 기상악화로 인해 바깥놀이를 하지 못할 경우, 대근육활동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희실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⑪ 교육청은 감염병 등으로 인해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경우를 대비하여 공립유치원에 무선인터넷을 설치하고 노트북을 지급한다.
- ⑫ 교육청은 유치원 원내 체험학습을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에 따라 누리과정 내에서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⑬ 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의 방학 중 중식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 **제46조 【공립유치원 업무 정상화】**

- ①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내 의견 수렴 및 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 ② 교육청은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제출 공문 중 동일한 사항에 한 해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통합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안내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③ 교육청은 동일한 내용에 대해 반복적으로 자료집계를 요구하지 않으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공휴일에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다.
- ④ 교육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시간 외에 문자메시지 및 메신저 등을 통한 업무 지시나 자료 제출 요구 등을 지양하도록 안내한다.
- ⑤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및 학급관리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경감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 ⑥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방과후 과정 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과후 과정 업무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
- ⑦ 교육청은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 계획에서 '방과후 과정 업무 담당자' 지정 문구를 삭제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의 업무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⑧ 교육청은 유치원 방과후 강사의 부재 시, 대체인력을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부득이하게 유치원 교사가 담당할 경우 적절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안내한다.
- ⑨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종일제(보결전담)강사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노

력한다.

- ⑩ 교육청은 유치원 교사가 법령에서 정한 복무·업무분장·근무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⑪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업무표준안 마련을 위한 관련 계획 수립 시 유치원교사를 포함하여 협의한다.
- ⑫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교육실무 지원 업무표준안 마련을 위한 관련 계획 수립 시 유치원교사를 포함하여 협의한다.
- ⑬ 공립유치원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활동 지원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⑭ 교육청은 유치원교사가 유치원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과 무관한 유아학비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⑮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교원의 통학차량 관련 업무경감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⑯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관련 업무를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보충협약, 2025.12.26.)

#### 제47조 【특수교육 정상화】

- ① 교육청은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의 실현성을 위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의 급당인원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특수학급 설치 및 특수교사를 배치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데에 노력한다.
  - 1.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교육청 주도의 특수학급 신·증설을 추진한다.
  - 2. 과밀학급 협력교사 배치 시 교사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책상을 학교 예산으로 지급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② 교육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에 따라 특수학교 및 각급 학교에 배치된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역할, 장애 학생에 대한 이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행동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수를 운영한다.
- ③ 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도전 행동으로 인한 교사의 신체·정신적 피해 발생과 관련한 교사 보호 조치 및 치유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다.
- ④ 교육청은 교육활동 중 특수교사가 장애학생의 행동문제로 인해 물질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 ⑤ 교육청은 특수교육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가급적 특수학급 업무 이외의 별도 업무를 부가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 ⑥ 교육청은 특수교사에게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돌봄 및 늘봄 업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지도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⑦ 교육청은 기관 소속의 특수교육 순회교사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⑧ 교육청은 특수교육 관련 학부모 및 교직원 연수 등에서 특수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강조한다.
- ⑨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교직원(공무직 및 시간제 근로자 등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의무연수를 원격과 집합연수로 관리한다.
- ⑩ 교육청은 교육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2018.12.19.)에 따라 특수학교에 특수교사 및 상담사 자격을 갖춘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 ⑪ 교육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근무하는 특수교사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⑫ 교육청은 특수교육 업무 정상화를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급 처리 방식을 치료지원비 지급방식과 동일한 카드 결제 방법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 ⑬ 교육청은 특수교사에게 사회복지무원(특수)의 급여지급 업무가 부가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⑭ 교육청은 중도 중복 장애 학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실시한다.(보충협약, 2025.12.26.)
  - 1. 특수교육교원의 정원 범위 내에서 중도중복 장애 특수학급당 1.5명의 특수교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 2. 일반 학교 중도중복장애 학급 담당 특수교사의 근무연한을 3년(초등 2년) 이내로 하도록 한다.
  - 3. 중도중복장애학급 학생 정원은 급당 4명으로 감축한다.
  - 4. 교육청은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중도중복 장애학생에 대해 관련 지침 시행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의료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 ⑮ 교육청은 특수학교 통학차량업무를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단, 통학차량 이용 학생의 안전지도는 교사가 담당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⑯ 교육청은 특수학교 교감(늘봄지원실장)이 종일반 관련 업무를 주관하도록 지도하고, 특수교사는 교육과정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⑰ 교육청은 유, 초, 중, 고등학교에 특수학급 증설 요인이 발생 시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학급 증설을 추진한다.(보충협약, 2025.12.26.)

#### **제48조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 및 사서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 ① 교육청은 학교 도서관이 설치된 초·중·고등학교 중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사서교사가 우선 배치되도록 노력하고 1학교 1사서교사 배치를 목표로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학교 도서관이 설치된 초·중·고등학교의 사서교사 정원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③ 교육청은 학교 도서관 활성화 및 효율적 컨설팅을 위해 학교 도서관 운영을 전담할 사서교사 교육 전문직을 선발·배치되도록 노력한다.
- ④ 교육청은 주말 방학중(휴무일 포함) 학교도서관을 개방할 경우, 단위학교에서 이에 따른 필요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교육청은 사서교사가 복무와 업무분장, 근무시간에서 다른 교원과 차별받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⑥ 교육청은 학교도서관의 교육과정 지원 역할과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적절한 독서교육 및 독서생활지도를 위해 신설되는 통합학교(초등·중등)의 각 급간에 사서교사를 별도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불가능할 경우 보조인력을 지원한다.
- ⑦ 교육청은 사서교사 정원 배치 및 전보 시 타 직종의 단체협약에 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⑧ 교육청은 사서교사의 정원배정 시 학교현장의 여건(학생 수·대출반납건수·도서관 이용률·연간도서관 활용수업시간·돌봄겸용교실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⑨ 교육청은 사서교사 전보 시 학교급별 및 지역별 사서교사 추가 배치 기관, 구역 만기자 및 퇴직 예정자 현황을 전보내신서 제출 마감 7일 전까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⑩ 교육청은 방학 중(휴무일 포함) 학교도서관을 개방할 경우 단위학교에서 이에 따른 필요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예산 확보가 어려운 학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⑪ 교육청은 양질의 장서를 구축하기 위해 도서구입 시 현장수서를 포함하여 수서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⑫ 교육청은 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도서관을 겸용교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될 경우 타 교사와 마찬가지로 사서교사의 별도 업무 공간을 마련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⑬ 교육청은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급 수와 학생 수 규모, 학교급을 고려하여 도서관 보조인력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⑭ 교육청은 「인천광역시 학교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개정 시, 사서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⑮ 교육청은 학교가 학교도서관 공간 개선, 장서 점검을 진행할 경우 필요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도한다.(보충협약, 2025.12.26.)

#### **제49조 【보건교육 및 보건교사 근무 여건 개선】**

- ① 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환경위생관리 업무 중 시설과 관련된 업무가 보건교사에게 부여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③ 교육청은 공기정화장치의 설치, 렌탈 등 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보건교사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④ 교육청은 공기질 검사, 정수기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 **제50조 【장애인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

- ① 교육청은 장애인교원의 처우 개선 및 장애유형에 따른 지원계획, 전보 등 주요 정책수립 시 장애인교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교원노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장애인 교원의 교육 활동 등에 필요한 업무지원 인력을 지원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 ③ 교육청은 장애인 교원 업무지원 인력의 원활한 직무 역할 수행을 위해 장애인 교원 업무지원인력에 대한 연수 및 장애 이해 교육을 실시한다.
- ④ 교육청은 장애인 교원에 대하여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발령 및 희망 근무지에 대한 의사를 반영하여 임용 · 전보하도록 노력한다.

#### **제51조 【학교 급식의 개선】**

- ① 교육청은 GMO 및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정책을 수립하여 학교급식에 건강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급식시설 현대화(오븐기, 냉 · 난방 시스템 등) 및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제52조 【학기 중 미급식일 중식지원업무 및 무상우유지원 문제 해소】**

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행정력 낭비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기 중 미급식일(현장체험학습일 등)의 중식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재량휴업일은 지자체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무상우유지원사업을 지자체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53조 【영양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교육청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올바른 영양관리 및 영양·식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를 교육청 예산 및 정원 내에서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1일 2식 실시 교
2. 통합학교(유 · 초 · 중 · 고)
3. 과밀학교(학생수 1300명 이상 교)

#### **제54조 【고교학점제 운영】**

- ① 교육청은 기관 소속 고교학점제 교과전담순회교사를 운영한다.
- ② 교육청은 학교에 고교학점제운영에 필요한 사항(각종 규정, 계획서, 과목 안내서 등)을 지원한다.
- ③ 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운영 시 최소학업성취수준 미도달 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을 학교에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④ 교육청은 고교학점제 계획과 지원에 관하여 현장 교원 및 교직원단체의 의견 수렴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

## 제5장 교권

### 제55조 【교사의 교육권 보호 및 생활지도 업무 정상화】

- ① 교육청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 보호를 위하여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히 침해한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내용이 입법화되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청은 교사단체가 추천하는 평교사를 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③ 교육청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사안(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사안)발생 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해당교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인천교사노조의 의견을 적극 청취한다.
- ④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교사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학교관리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교육청에 접수되면 해당 학교를 관리·감독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⑤ 교육청은 연 1회 이상 학생, 학생의 보호자, 교직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자료를 보급하여 각급학교가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급 학교는 연 1회 이상 학생, 학생의 보호자,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 ⑥ 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수업방해,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거부를 행하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다. 학교는 교육구성원의 합의하에 징계 외 생활지도 규정을 마련할 수도 있다.
- ⑦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대처 방안을 매뉴얼화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하며,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  
(보충협약, 2025.12.26.)
- ⑧ 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의 보호조치를 지체없이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한다.
- ⑨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⑩ 교육청은 학교 내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갑질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접수된 사안의 종류와 경중을 고려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가가 조사·판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⑪ 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 ⑫ 교육청은 교사가 아동 학대 의심사례를 신고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원장)명의로 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⑬ 교육청은 상담활동 중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해 발생한 교사의 심리적 피해 및 소진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 ⑭ 교육청은 각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원위원 비율을 30% 이상 확보 및 학교급별 교원을 포함하도록 노력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⑮ 교육청은 상담주간을 단계적으로 폐지 및 수시 상담이 가능함을 적극 홍보한다.  
(보충협약, 2025.12.26.)
- ⑯ 교육청은 교직원을 위한 전화응대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보충협약, 2025.12.26.)
  - 1. 교직원이 사용하는 인터넷전화에 녹음 기능 제공
  - 2. 교육기관 통화연결음 전화응대 보호멘트 적용 안내
  - 3. 통화 중 폭언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상담 및 치료서비스 지원
  - 4. 통화 중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학교민원 응대 안내자료에 포함
- ⑰ 교육청은 교육부 학교 민원응대자료에 근거하여 학교 민원대응팀을 구성·운영하도록 학교에 안내하고, 학교민원응대 세부절차 수립 시 인천교사노조와 협의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⑱ 교육청은 교사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정당한 행위에 대한 학부모 등 민원인의 고소·고발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을 경우 교원보호공제 약관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⑲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이 심리치료, 상담, 치유 회복 프로그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⑳ 교육청은 법령에 근거하여, 분리지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분리 공간과 인력을 지원한다. (교육청은 학교의 특별실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간에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 장소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한다.)(보충협약, 2025.12.26.)
- ㉑ 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 방안 마련을 위해 교원단체와 상호 필요시 협의회를 운영하고, 인천교사노조의 참여를 보장한다.(보충협약, 2025.12.26.)
- ㉒ 교육청은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보호공제 약관에 따라 교원 위협대처 경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안내한다.(보충협약, 2025.12.26.)

#### **제56조 【교육 활동 중 사고로부터의 교권 보호 및 예방】**

- ① 교육청은 교원의 각종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보호공제에 일괄적으로 가입하도록 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②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회복 및 치유비 지원은 학교장 또는 피해 교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한다.
- ③ 교육청은 인천교사노조가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활동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을 편성·지원할 수 있다.
- ④ 교육청은 교원보호공제 약관에 따라 교육 활동 중 발생한 교원의 업무 과실 및

각종 사고에 대하여 교원의 민·형사상 소송 및 신고에 대한 법률비용을 보전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 사고가 아니면 해당 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또한 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보호공제 보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⑤ 교육청은 교권침해 방지를 위해 녹취시스템을 이용한 통화 녹음을 지원하고 녹취 청취 및 다운로드 방안을 마련·안내한다.
- ⑥ 교육청은 학교 민원 전화 시 교직원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안내하는 내용이 자동 응답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⑦ 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 제48조와 『사립학교법』 제60조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현직 교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교 내에서 체포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 ⑧ 교육청은 학교에서 초등돌봄실무인력(돌봄행정실무사, 초등돌봄전담사, 돌봄 프로그램 강사 등)에게 학교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관련 초기대응 및 처리 매뉴얼을 안내하고 관련 연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지도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⑨ 교육청은 교원단체와 교권관련 협의회를 연 2회 이상 운영하며, 인천교사노조의 참여를 보장한다.
- ⑩ 교육청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위원회에 인천교사노조에서 추천한 교사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 ⑪ 교육청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침해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서 피소를 당할 경우 민사·형사상 소송비용을 교원보호공제 약관에 따라 지원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⑫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의 상담이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⑬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관련 교육감 대리고발 사안일 경우 경찰 수사단계부터 법률비용을 지원한다.(보충협약, 2025.12.26.)

#### **제57조 【교사의 개인정보 및 초상권 보호】**

- ①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교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지원한다.
- ② 교육청은 교원의 전보 시에 포털기사 등으로 교사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전보 내용이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공유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교육청은 졸업앨범에 해당 교원의 동의를 얻어 사진을 올리도록 지도한다.
- ④ 교육청은 온라인 상에서 교원의 동의 없이 사진 또는 동영상의 공유되지 않도록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지원한다.
- ⑤ 교육청은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교원안심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 **제58조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및 규제 등】**

- ① 교육청은 학교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학교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한다.
  1. 연 1회 이상 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2.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의 마련
  4.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5. 학교장이 성희롱·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상담, 피해자 보호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즉시 관련 기관 신고 및 상급기관에 보고
  6.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 2차 피해방지를 위해 피-가해자 분리 및 인사 이동 시 동일학교에서 다시 만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기준에 명시
- ② 교육청 주관 교장, 교감 등의 자격연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성평등 관련 교육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59조 【공익제보자의 인권보호】**

- ① 교육청은 각급학교(사립학교 포함)에서 비리 관련 민원제기 및 내부고발한 사람의 인권 및 신변을 보호하고, 인사 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 ② 교육청은 민원제기 및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하는 공무원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행정 조치한다.

### **제6장 교원 후생복지**

#### **제60조 【교원의 문화 활동 지원】**

교육청은 직영하는 문화 체육 시설(교직원수련원, 학생교육원 등)을 교원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 관련 조례에 따라 이용하도록 한다. (단, 학생교육원은 학생의 수련 및 현장체험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용 할 수 있다.)

#### **제61조 【교원의 후생복지】**

- ① 교육청은 학교별로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남·녀 휴게실을 각각 설치하고, 단위 학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휴게실 설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권장한다.
- ② 교육청은 탈의실과 샤워실 설치를 위해 신설 및 전면 개축학교는 설계에 반영하고, 기설 학교는 여유 공간 확보 시 설치하도록 지도한다.
- ③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문화행사, 체력단련 등 교원복지 예산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④ 교육청은 교무실, 연구실, 특별실 등의 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공기청정기 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진공청소기 구입비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구입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⑤ 교육청은 맞춤형복지 점수 200점을 교사 건강검진비(격년제)로 부여하고, 결핵검진비를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⑥ 교육청은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복지포인트 액수, 사용방법의 편의성 등의 면에서 인천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⑦ 교육청은 맞춤형복지 기본포인트 및 특별포인트(건강검진)를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인상하도록 노력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⑧ 교육청은 강화,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교사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보충협약, 2025.12.26.)

#### **제62조 【교원연구비】**

교육청은 교원연구비가 월 75,000원으로 모든 교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 **제63조 【출장 여비와 연구비】**

- ① 교육청은 교육 활동(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야영, 수학여행, 교외 특별 활동 등)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 지급하고, 출장 중에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면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② 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비)숙박형 현장체험활동)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 인정될 때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 드러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전계획에 따라 교육 활동을 수행한 경우에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함께 지급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③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보결수업예산을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내한다.
- ④ 교육청은 교사가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이전하게 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전비와 국내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⑤ 교육청은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포함) 장소를 사전답사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출장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⑥ 교육청은 일과 후 시간에 수업준비, 공문처리,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 학생상담, 담임업무 등이 초과근무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⑦ 교육청은 신규임용예정 교사 및 휴직 중인 교사가 학교자체계획에 의거 새학기 근무할 학교의 협의 및 연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여비지급이 가능함을 안내한다.(보충협약, 2025.12.26.)

#### **제64조 【체육복 및 실습복】**

교육청은 교원의 실험·실습북, 중·고등학교의 체육담당 교사와 유치원·초등학교에서 체육과목(활동)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의 체육북 및 운동화가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보충협약, 2025.12.26.)

#### **제65조 【출산휴가 등 모자보호】**

- ①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법령 등(규정, 예규, 지침 등)에 따라 출산휴가, 자녀돌봄휴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하도록 지도한다.
- ②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법령 등(규정, 예규, 지침 등)에 따라 육아시간을 보장하도록 지도한다.
- ③ 교육청은 학교장에게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여교사의 출산휴가를 조산·유산·사산의 경우에도 허가하도록 지도한다.
- ④ 교육청은 여교원이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무급)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⑤ 교육청은 자녀 출산 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남교원의 특별휴가 10일이 보장되도록 지도 감독한다.
- ⑥ 교육청은 출산한 여교원을 위해 학교별로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유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⑦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매 학기 초 육아시간 사용에 대해 안내하고 육아시간 사용 시 NEIS 상신 외에 별도의 구두보고 및 내부기안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또한 교육청은 교원의 육아시간 사용 관련하여 학교 내에서 어떠한 불이익이나 모욕적인 언행 등을 받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⑧ 교육청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포함)후 1년 미만의 여교사에 대해서는 근무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⑨ 교육청은 육아휴직 교원이 복직하는 경우 원직교 복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후임 충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 ⑩ 교육청은 난임휴직자의 증빙서류 제출 주기를 반기별(6월 30일, 12월 31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보충협약, 2025.12.26.)

## **제7장 학생복지**

#### **제66조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

- ① 교육청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 온도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② 교실의 조도는 300룩스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 ③ 교육청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실내 소음이 법정 기준 내로 유

지되도록 한다.

- ④ 교육청은 관계 법령에 의거 각 급 학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노력한다.
- ⑤ 교육청은 학교 시설에 오염 물질을 방출하는 건축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친환경 소재로 교체하며, 학교 신·개축 시 새집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⑥ 교육청은 각급학교의 화장실에 화장지, 비누 등 위생용품이 비치되도록 지도하고,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실의 경우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예산 범위내에서 일시적으로 청소업체와 계약하여 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예산 편성을 지도한다.
- ⑦ 교육청은 지하수, 상수도 등 먹는 물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하여 교직원 및 학생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⑧ 교육청은 학교공사 지연으로 인해 교육과정이 파행 운영되지 않도록 학교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⑨ 교육청은 노트북 보급 사업 관련 각급학교의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노트북이나 탭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와이파이 증설 및 개선을 지원한다.(보충협약, 2025.12.26.)

#### **제67조 【학생 복지】**

- ① 교육청은 각급학교 매점 및 자판기가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금지품목이 판매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② 교육청은 학교 화장실 용변기 개수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화장실 시설을 현대화하도록 한다.
- ③ 교육청은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여성용품(생리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 ④ 교육청은 학교 신·개축 및 화장실 사업 시 여학생 대변기 수를 남학생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화장실 시설은 학생들의 체형과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대화되도록 노력한다.
- ⑤ 교육청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노동권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을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켜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 ⑥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학생의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보충협약, 2025.12.26.)

#### **제68조 【학생 자치활동】**

- ① 교육청은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에 의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 ②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③ 교육청은 각 급 학교에 학생 자치활동 공간(학생회의실 등)을 확보하고 일정규모

이상 쾌적한 공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부 칙

### 제1조 【유효기간】

-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 제2조 【협약갱신】

교육청과 인천교사노조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간 중에 어느 일방도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3조 【보충협약 및 재교섭】

교육청과 인천교사노조 쌍방은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경제적 · 사회적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 【이행계획서 작성】

교육청은 단체협약 이행계획서 초안을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4주 이내에 작성한 뒤, 인천교사노조와 의견 조율을 거쳐 국공립 유치원 · 초 · 중 · 고등학교에 배포한다.

### 제5조 【이행방법】

- ① 교육청과 인천교사노조는 본 협약의 항목별 이행 추진계획 및 결과를 현안협의회에서 점검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② 교원노조에서 미이행 사례를 제시할 경우 교육청은 이를 확인하고, 이행 상황 결과에 따라 미이행 학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지도한다.
- ③ 교육청은 연 2회 인천교사노조가 요구하는 단협 사항에 대해 상호협의를 통해 이행점검표를 작성하여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미 이행학교에 대하여는 현장 점검 등 그 이행을 지도하며 이행결과를 현안협의회 개최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④ 교육청은 본 단체협약 내용에 대하여 공문 시행 등의 방법으로 학교장 및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소속 직원에게 안내한다.

- ⑤ 교육청은 각급 학교(원)장, 교(원)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시 인천교사노조에서 요구하는 주요 단체협약 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 ⑥ 교육청은 각 과 업무 계획 및 추진 시 단체협약과 상호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한다.
- ⑦ 교육청은 본 협약의 예산 관련 조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한다.
- ⑧ 교육청과 인천교사노조는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의 해석상의 이견이 생기는 협약 사항에 대해 소관 업무담당 부서와의 공동해설을 통해 이행을 지도하고 단체협약 시 상호 합의한 조항에 대하여 협약 체결 후 공동해설서를 작성하며, 이를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산하기관에 송부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⑨ 교육청은 단체협약을 계속하여 불이행하거나 이행점검과 관련하여 허위보고할 경우 해당기관(관리자)에 대해 행정지도 및 행정조치 한다.(보충협약, 2025.12.26.)
- 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관계 및 노동관계 법규 등에 따른다.

#### **제6조 【협약의 보관】**

본 단체협약서는 이를 증거하기 위해 3부를 작성하여 교육청과 인천교사노조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2025. 12. 26.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인 천 교 사 노 동 조 합 위 원 장**

**도 성 훈**

**김 성 경**